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6
----------	-----

2011년 6월 30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1년 5월 19일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회부일자 : 2011년 5월 26일
- 라. 상정일자 :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및 명칭을 개정함 (안 제3조~제4조)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조례개정안의 제안배경

-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2009.12.29 일부 개정과 동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2010.7.9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이하 '알법'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일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알법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명의 약칭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안 제2조와 안 제3조제1항에 약칭을 반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제1조(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제44조와 영 제39조의 경우 2009.12.29 동 법률의 일부개정과 2010.7.9 영 일부개정으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관리)는 현행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의 3개 조문으로 분리 신설되었으며,
- 영 제39조(공동구의 관리) 역시 현행 영 제39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으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
-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제44조와 영 제39조 역시 관련 조문 모두를 인용해야 함에도 이를 동 개정안에 반영치 않아 혼란에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조문 모두를 명기하든지 아니면 인용법명만 명기하고 조문번호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에 대해선 인용조문 개정과 알법에 의한 단순 문구 수정에 지나지 않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붙임 1. 2009.12.29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규대비포

2. 2010.7.9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규대비포

개 정 전	개 정 후
<p>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④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수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비율 및 방법, 공동구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2.6]</p>	<p>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p>

-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개정 전	개정 후
<p>제39조(공동구의 관리) ①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p> <p>②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③공동구관리협의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p> <p>④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⑤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p>	<p>제39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p>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밀점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p>[전문개정 2010.7.9]</p> <p>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부담 등에 관

한 사항의 심의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부시장·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공동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9]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9]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현행 조례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인용한 “동법 시행령 제39조”도 개정안 제3조제2항에서 “영 제39조”를 “영 제39조의2”로 변경한 것과 같이 개정하여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아 이를 상위법명만 남기고 인용조문번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26
----------	-----

제안년월일 : 2011년 6월 30일
제안자 : 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현행 조례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인용한 “동법 시행령 제39조”도 개정안 제3조제2항에서 “영 제39조”를 “영 제39조의2”로 변경한 것과 같이 개정하여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아 이를 상위법명만 남기고 인용조문번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함.(안 제1조)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등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u>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p> <p>제3조(점용허가 등) ①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동구----- ----- -----.</p> <p>제2조(정의)-----<u>공동구란</u>-----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p> <p>제3조(점용허가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8조에 따른 -----</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 -----.</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점용허가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점용 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u>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회"라 한다)</u>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제4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u>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u>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p>	<p>----- ----- ----- ----- -----.</p> <p>② ----- -----<u>영 제39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p> <p>제4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u>제3조에 따라</u>----- ----- -----.</p> <p>②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하되,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u>관리협의회</u>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때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다.</p>	<p>----- <u>협의회</u> ----- ----- ----- -----.</p>	
<p>③ <u>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u>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다.</p>	<p>③ <u>영 제38조에 따른</u> ----- ----- ----- -----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생략) 제6조(부과·징수)</p>	<p>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부과·징수)</p>	<p>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부과·징수)</p>
<p>① (생략) ② <u>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u>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p>	<p>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u> ----- -----</p>	<p>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 ----- ----- ----- -----.</p>	
<p>③ 제4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③ 제4조제4항에 따른-----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연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년 5월말일과 11월말일로 한다.</p>	<p>④ 제5조에 따른----- --- 연 2회----- ----- -----.</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이의신청) ① (생략)</p>	<p>제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제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부과·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③ ----- ----- ----- <u>제2항에 따른</u> ----- -----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 <u>제2항에 따른</u> ----- ----- ----- ----- ----- -----.</p>	<p>④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를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에 따라”로, “공동구의”를 “공동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영 제39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제4항에 의한”을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등 징수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공동구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p>
<p>제3조(점용허가 등)</p> <p>①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점용 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p>	<p>제3조(점용허가 등)</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 ----- ----- ----- -----.</p> <p>② ----- -----영 제39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구협의회(이하</p>

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 받은 때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다.

③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지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의회"라 한다)-----
-----.

제4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제3조에 따라-----
-----.

② -----

----- 협의회-----

③ 영 제38조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
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연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
은 매년 5월말일과 11월말일로 한
다.

제7조(이의신청)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
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공동구의 점용
료·사용료·관리비 부과·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을 당
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
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③ 제4조제4항에 따른-----
-----.

④ 제5조에 따른 -----
연 2회-----

-----.

제7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③ -----

제2항에 따른-----
-----.

④ ----- 제2항에 따른

-----.